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 ICPAC 국제적 반경쟁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국제적경쟁정책자문위원회(ICPAC,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2월 28일 Janet Reno 법무부 장관 및 Joel I. Klein 법무부 반독점국장에게 국제적 반트러스트 이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는 ①다수 국가의 관할을 받는 기업결합문제(제2장, 제3장), ②국제카르텔의 법집행에 대한 상호 협력(제4장), ③무역과 경쟁의 상호 작용(제5장), ④장래의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언을 하고 있다.

1. 국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1) 기업결합에 대해 다수 국가의 관할을 받는 경우 발생되는 모순적인 결과와 충돌, 또는 부담이 많이 드는 구제책은 거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경쟁촉진적 거래의 포기라고 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여러 경쟁당국이 심사함으로써 경쟁당국간에 서로 모순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문위원회는, 결합심사제제간의 본질적인 조화와 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이 최선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각 국은 ①투명성을 보다 촉진하고, ②상당수의 국가들이 연계효과를 갖는 결합심사지침에 대한 기준의 빌전, ③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결합규제당국에 의한 심사과정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하여 상당한 거래비용을 부과한다고 자문위원회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점규제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불필요 또는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시정하고 결합심사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그동안에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20건에 이르는 국제카르텔을 기소하였다. 이 가운데는 복잡한 것도 있으며 전세계적 규모인 것도 있고 또 한 장기적인 것도 있었다. 최근의 국

제카르텔에 대한 미국의 성공적인 집행은 카르텔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미국의 성공례를 참고로 각국의 경쟁당국도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포함, 다양한 반카르텔 집행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쟁당국간에 있어서 비밀정보의 교환은 협력관계 강화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국은 국민에 대하여 국제카르텔의 유해한 효과를 알리고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무역과 경쟁에 대하여

이 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관한 국제무역과 시장활동을 억제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경쟁정책 모두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집행당국, 산업계, 경제학자, 노동단체, 변호사 등으로부터 문제에 대응키 위한 잠재적인 정책선택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적극적 예방규정을 포함 2국간 협정, 역외적용 및 다자간 발의권(initiative)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미국이 세계경제 및

미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상의 문제 등에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방법 외의 몇 가지 다른 접근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 장래에 대비하여

자문위원회는 미국 및 국제사회가 경쟁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새로운 임무 및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번째는 미국정부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에 대하여 정부, 기업, NGO 등이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고, 관심이 있는 정부 및 규제기관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글로벌 경쟁 initiative」라고 부를 수 있다.

두번째는 미 정부, 기타 관심이 있는 정부 및 국제기관은 국가간에 있어서 경쟁상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 메카니즘을 설치하는 것을 토의할 수 있다.

이외에 자문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법무부 역할, 경쟁정책에 있어서의 기술협력 확대에 대하여 검토를 행하고 있다.

■ 2000. 2. 28, ICPAC 발표

미 법무부, Butterfield & Butterfield사에 소환장 발부

미 법무부는 eBay사가 작년에 취득한 Butterfield & Butterfield사에 소환장을 발부하여, 동 기업의 최근 사업변경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0일 발표된 eBay사의 분기별 회계보고시에 행해진 성명에서, 기업 임원들은 지난주의 소환장 발부가 몇몇 주요 경매업체들간의 가격고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조사의 일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는 구매자의 기준가 이상 낙찰금액에 대한 경매업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문서 및 1992년 이후 “다른 경매업체들과의 논의, 합의 내지 양해”에 관련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당해 경매업체의 대리인인 Levi Morgan은 동업체는 정부의 기록 및 기타 정보제출 요구에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eBay사의 대변인인 Kevin Pursglove는 Butterfield & Butterfield사가 당해 소환장을 받았으며, 동 기업은 조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할 생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eBay사는 작년 4월 동 미술품 및 수집물을 취급하는 동업체 취득을 위해 2억 6,0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몇몇 보도는 연방당국이 크리스티 및 소더비를 포함한 경매업체가 관련된 가격고정 구도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 2000. 3. 20, The New York Times

FTC와 FCC, 장거리전화서비스의 기만적 광고에 관한 공동정책성명 발표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10-10 디이얼링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광고의 신뢰성을 촉진 -

FTC와 FCC(연방통신위원회)는 3월 1일, 일반적으로 「10-10」번으로 불리는 디이얼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장거리서비스의 불공정 및 기만적 광고와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은 사업자에 대하여 광고가 진실하고 확실하며 그리고 오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증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는 FCC가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작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통신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기술혁신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소비자는 보다 많은 선택권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다만 디이얼 관련 번호, 장거리전화 계획 및 기타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관한 광고의 증가와 서비스 측

진방법에 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신뢰성 있는 광고의 원칙을 격동하는 시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월 1일 발표된 상기 성명은, 1999년 11월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장거리서비스의 광고 및 판매에 관한 토론을 위해 FTC와 FCC 당국이 공동개최한 포럼 개최 후에 발표되었다.

FCC 위원장 William Kennard는 "이 성명은 우리가 고생하여 구축한 경쟁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요금 청구서의 신뢰성과 함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FTC 위원장 Robert Pitofsky는 "이 산업은 세계최우량 통신서비스를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성명은 기업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광고개발을 권장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공동포럼으로부터 FTC와 FCC는 광고의 신뢰성에 관한 정책성명을 발전 시켜 장거리서비스에 관한 신뢰성 있는 광고를 위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광고선전에 있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① 진실하고, ② 오인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③ 실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1통화 당의 최저요금, 월액료 및 일반적 서비스로 등과 같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광고에 있어서, 기재된 요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또는 자리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기술 하여야 한다. 가격비교에 관한 주장 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격비교시에는 가격비교 주장시에 이용되어진 현시점에서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판단을 혼란시키는 요소를 배제하여 소비자가 충분하게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FCC는 이전에 이미 전화회사에 의한 불공정 및 기만적인 광고선전이 통신법상의 불공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월 1일 공표된 공동정책성명은 합법적인 광고관행을 따르기를 바라는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안내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상기 성명으로 FTC와 FCC는, 통신 산업계가 공동정책성명에서 제안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게 좋다는 점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장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자침이 된다. FTC와 FCC 직원은 장거리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및 동 정책성명 또는 더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동 공동정책 성명은 기존의 미국법률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2000. 3. 21, FTC 발표

미 FTC,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온라인 구매 계획 검토

부품 구매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GM사, 포드사 및 다이얼러크라이슬러사의 계획은 당해 협정이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담합을 조장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부품공급업체들이 제품을 자동차업체들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기업 대 기업(B2B)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세계 3대 자동차업체들의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발표된 당해 계획은 부품 및 원자재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기업 대 기업 네트워크 중의 하나가 될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협정들이 화학, 석유 및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유사한 네트워크에 대해 FTC의 검토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D.C.의 반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인 Mark Gidley는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비용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친 경쟁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부 내용이다."라며, "어떠한 기업 대 기업 네트워크도 적절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반트러스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형기기공급업체협회의 한 임원은 당해 검토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러한 네트워크를 검토해서 부당한 경쟁적 이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 협회의 이사인 Neil De Koker는 말하였는데, 동 협회는 200개사 이상의 자동차부품회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De Koker는 FTC의 조사가 “부품공급업체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 22일 FTC가 예비적 조사를 수행한 후 당일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기업이 Hart-Scott-Rodino 법에 따라 합작투자기업 설립계획을 제출할 때 촉발된다.

■ 2000. 3. 23, Los Angeles Times

미 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트러스트법 위반 판결

미 연방법원은 4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셔먼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으며, “반경쟁적인 수단에 의해 독점력을 유지하였고”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화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Thomas Penfield Jackson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위법하게 웹 브라우저를 자사의 운영체제에 연계시킴으로써” 동 법의 또 다른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주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당해 판결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어떠한 처벌이 부과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심리가 열릴 것인데, 이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당해 대형 기업의 분할 문제가 포함된다.

Jackson 판사는 당해 사건에서 연방정부의 소송에 참가한 주들이 제기한 26개 주장 중 23가지를 받아들였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첨단기술산업에서 경쟁 및 혁신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재판과정 전체를 통해 Jackson 판사는 본 사건의 양 당사자에 대해 법정 외 화해에 도달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는 지난 주말 결렬되었으며, Jackson 판사로 하여금 3일에 자신의 판결을 내리도록 촉발하였다. 양측은 당해 사건을 화해로 종결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해 사건의 법정에서의 다툼을 수년간 지속시키게 될 항소 과정을 회피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Jackson 판사의 판결은 그가 작년 11월 “사실관계 판결”에서 개관한 엄격한 평가에 기초하여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동 문건에서 Jackson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독점력을 이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정통한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2일, 시카고에서의 협상은 동 기업이 화해를 위해 자사의 제안을 고집하였기 때문

에 결렬되었으며 주 및 연방정부 원고들간의 분쟁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정부들이 3월 31일 새로운 제안을 내기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부측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자사의 접근방법을 고집하고 있었음이 명백했다”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4월 1일 “법무부와 주들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화해하기가 불가능해졌으며, 이들은 우리 회사의 분할 내지 다른 극단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 기업의 소송에 따른 화해 제안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2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Jackson 판사의 판결에 관계없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원도우즈 소프트웨어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당해 판결은 법적 절차 중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컨네티컷 주 법무장관인 Richard Blumenthal은 빌 게이츠의 주장을 일축하며 “주정부들과 법무부간의 의견의 차이는 우리측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간의 간극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아이오와 주 법무장관인 Thomas Miller는 당해 협상과정을 “매우 복잡하였다”고 묘사하면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당해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주정부들의 입장이 실패의 원인은 아니

었다”라고 하였다. 관련 협상은 시카고 주재 미 항소법원장인 Richard A. Posner의 중개하에 진행되었다. “중개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협상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협상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Miller 장관은 말하였다.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은 법무부가 1998년 원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며칠 전에 정부측 변호사들과 협상하였다. 합의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정부측 변호사들은 빌 게이츠가 행한 제안에서 세부내용이 재고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해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11월, Jackson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업체이며 동 기업은 경쟁업체의 제품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시장력을 이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정부의 제소내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결국 최종 제안이 된 제안을 3월 31일에 제출하였는데, 이 날짜는 주정부들이 자신의 제안을 행한 일자와 같았다. 이 날 이전에 당해 기업이 정부측 제안을 거부하고 있음을 명백하였다고 관련소식통은 전하였다.

정부측 제안은 어떤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소프트웨어와 연계판매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품에 윈도우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였거나 경쟁기술을 지원한 PC업체들에 대해 보복하지 못하도록 다

른 규칙들이 고안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안은 경쟁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이용가능하게 될 정보에 관한 규정에서 흡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경쟁업체들이 자사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코드 정보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당해 소식통은 밝혔다.

■ 2000. 4. 3, Los Angeles Times

미국 3개 주, 총기산업에 대한 반트 러스트 조사에 참가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및 매서추세츠 주는 4월 6일, 미국 최대의 총기업체인 Smith & Wesson사가 권총의 제조 및 유통방법에 대한 제한에 동의한 이후 다른 총기회사들이 동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합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뉴욕 주, 커넥티컷 주 및 매릴랜드 주가 진행중인 총기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사의 업무조정을 돋고 있는 커넥티컷 주 법무장관 Richard Blumenthal은 더 많은 주가 반트러스트 조사에 합류할 수도 있으며 이 주들은 “각 주를 초월한 전국적인 범위의 조사에서 하나의 팀처럼” 작업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lumenthal 장관은 이미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작

업반이 곧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의 공동조치는 총기업체들이 전미총기협회의 지지를 얻어 몇 년간 의회 또는 주 차원의 조사를 회피하여 온 이후 당해 산업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정부 차원의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반트러스트 조사는 30개 시·군이 총기제조업체 및 도·소매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몇 소송은 곧 증거조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총기산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판매관행에 의해서 범죄인들과 청소년들의 권총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총기제조업체들에 대한 소송들은 이들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총기 마케팅의 부주의로 범죄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기소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트러스트 조사에서 주 관리들은 매서추세츠 주 Springfield에 소재한 Tomkins P.L.C.의 사업부문인 Smith & Wesson사가 3월 17일, 관련 주들의 소송 철회 대가로 광범위한 제한에 동의한 이후 총기업체들이 동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담합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3월 17일 이후, Smith & Wesson사가 연관된 소송을 담당하였던 시카고의 한 법무법인이 동 회사의 소송대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며, 한 대

형 도매업체는 Smith & Wesson사의 총기 유통을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몇몇 판매업체들은 더 이상 동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동업체를 해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인지의 여부이다.

총기산업의 사업자단체인 전미사격 스포츠재단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발적이며 독립적이고 어떠한 목적을 지닌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주정부들은 주의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연방법률을 모델로 한 것이다.

■ 2000. 4. 6, The New York Times

미 FTC, BP Amoco - Arco 기업결합 인가

BP Amoco PLC가 Atlantic Richfield Co.의 인수를 개시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그 결실이 이루어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월 13일, BP Amoco사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rco사의 알래스카 주 소재 자산 전체를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276억 달러 규모의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BP Amoco사는 알래스카 주의 보유 자산-석유 및 가스 지분, 유조선, 송

유관 및 개발권 - 을 70억 달러에 Phillips Petroleum Co.에 매각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당해 매각은 30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BP Amoco사는 Arco사의 취득이 18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런던에 소재한 BP Amoco사의 회장인 John Browne은 “전세계에 걸친 우리의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을 신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새로이 탄생하는 회사는 엑손 모빌 사에 뒤이어 정부 소유하에 있지 않은 세계 2위의 석유회사가 될 것인데, 엑손-모빌 기업결합은 작년 11월에 FTC의 인가를 받았다.

FTC와의 합의에 따르면 BP Amoco사는 오클라호마 주 Cushing에 소재한 송유관 및 유류저장소 지분 일부도 매각하여야 한다.

일단 당해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Arco사의 주주들은 보유중인 주식 1주에 대해 BP Amoco사의 주식 1.64주를 받게 된다.

FTC의 인가는 BP-Arco 기업결합이 알래스카 주 유전과 미 서해안 소매 휘발유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해소 방법에 관한 집중적인 수 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월 FTC 법률가들은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기로 하고 이를 연방 법원에서 디폴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당해 기업결합이 알래스카 주에서의 유전개발, 석유 생산 및 수송을 지배하고 알래스카 주 원유에의 의존

도가 높은 미 서해안 정유업체들에게 가격을 지시하게 될 “거대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 분석가들에 따르면 13일에 합의된 자산매각으로 인해 기업결합의 결과 새로이 탄생할 회사의 알래스카 주 지분은 대략 70%에서 45%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5명의 FTC 위원 중 다수는 성명을 통해 BP Amoco사와의 합의내용은 “경쟁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된 중첩을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 및 다른 위원인 Mozelle Thompson은 개별 성명을 발표하여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동 합의내용이 BP Amoco사의 알래스카 주 석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우려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엑손 모빌사는 13일 알래스카 주 지분의 매각과 관련하여 관련회사들과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엑손 모빌사는 당해 매각을 금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기업결합 저지를 위한 별도의 반트러스트소송을 제기하였던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및 오리건 주도 소송 화해를 발표함으로써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제기를 종료하였다.

알래스카 주지사인 Tony Knowles는 “이 결정이 규제당국의 검토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의 끝이 되어 우리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으면 한다”

고 말하였다.

■ 2000. 4. 14, The New York Times

영국

영국 경쟁당국, NTL - Cable & Wireless 기업결합 인가

영국 경쟁위원회는 NTL사에 의한 Cable & Wireless Communications사 유선방송 지분 취득 제안에 대하여, Stephen Byers 통상산업부 장관이 당해 거래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기각하고 이를 인가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Byers 장관은 기업 계로부터는 경쟁당국의 결정을 번복한다고 비난받아 왔으며 Rover사의 경영위기와 관련하여서도 압력을 받아 왔다.

Byers 장관은 작년 공정거래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82억 파운드 규모의 당해 기업결합 제안을 경쟁위원회에 회부하는 드문 조치를 취했는데, 그는 당시에 “유선방송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 경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쟁위원회는 3월 22일 당해 기업 결합이 경쟁이나 소비자를 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스닥 상장회사인 NTL사를 영국의

주도적 유선방송사업자로 만들게 될 당해 기업결합은 조건없이 인가되었다.

동 위원회는 소비자협회가 의견서에서 “경쟁위원회에의 회부는 유선방송 서비스의 장래에 대한 토론에 관해서 볼 때 시기 및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Byers 장관은 “언론의 평론가들이 표명한 견해와는 반대로, 이번 회부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강력한 우려 표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이 통신 서비스, 소비자 선택 및 사업자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동 위원회에 의해 모두 논박되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NTL사와 CWC사는 별개의 지역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상 문제가 없다는 분석가들의 다수 견해를 지지했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당해 기업결합이 유료 TV 사업자간 경쟁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의 당해 기업결합 인가 결정은, 통신산업의 도움으로 무료 인터넷 접속 도입을 촉진하려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력을 감안할 때, Byers 장관에 대한 정부 내 비판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산업계 인사는 당해 검토가 6개 월 내에 모든 가정과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는 블레어 총리의 계획을 후퇴시켰다고 하였다.

제2위 유선방송 사업자인 NTL사와

CWC사의 유선방송 자산의 통합은 영국 내 유료TV 시장의 27%를 점유하는 기업을 탄생시키게 되지만, 이 시장의 지배력은 여전히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료TV 사업자인 BSkyB사가 가지게 된다.

“이 기업결합은 중소기업을 제약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한 관측가는 언급하였다.

CWC사와 NTL사는 통상산업부가 France Telecom사의 NTL사에 대한 투자에 관해 별도의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기업결합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결정이 수일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련기업들은 말하였다.

■ 2000. 3. 22, Financial Times

E U

마이크로소프트사, 유선방송 관련 조사받을 듯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PC에서 텔레비전으로 확대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획은 유럽 반트러스트 당국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쳤다.

유럽위원회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다른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들이 유럽 유선방송 운영업체들에의 투자를 이용하여 이제 막 발달중인 시장에서 기술을 제약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22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영국 유선방송회사인 Telewest사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해 상세한 2단계 조사가 개시된다고 발표했다. EU 반트러스트당국의 당해 조사는 영국 유선방송 산업이 사용하는 셋톱박스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해 이 소프트웨어 그룹이 미칠 영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Media One사로부터 Telewest사 지분 29.9%를 매입한다면, 동 기업은 미국 통신회사인 AT&T사의 자회사인 Liberty Media사와 함께 Telewest사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다.

몬티 위원은 이번에 실시되는 4개 월간의 조사 동안 동 위원회 위원들은 당해 거래가 디지털 유선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평가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원도우즈 운영체제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및 유럽의 몇몇 유선방송사업자에 투자를 행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 위원회가 기술발달에 대해 갖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사 소속의 변호사인 Patrick McDermott는 “이러한 우려사항이 근거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의 선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사실 이 부문에 관한

우리의 운영체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Telewest사의 셋톱박스는 현재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Liberate사가 개발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Telewest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미 경쟁상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가지 서약을 브뤼셀 EU 당국에 행한 바 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Telewest사가 셋톱박스에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후속제품 선정을 위한 논의에서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Telewest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약은 EU 경쟁담당 위원들을 납득시킬 만큼 충분치 못하였다.

Media One사의 Telewest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1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는 작년 5월 결정된 AT&T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50억 달러 규모 투자의 일부였다.

동 위원회는 금년 8월초에 결정을 내릴 것인데, 1차적 소비자 및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2년 전 동 위원회는 독일 방송 그룹인 Kirch사와 Bertelsmann사가 관련된 독일 디지털 유료TV 투자사업계획을 저지하였는데 디지털TV에 요구되는 기술에 있어 당해 투자사업이

강력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도우즈 2000을 출시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3월 23일 금년 사업결과 발표시에 광역대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 계획을 개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Telewest사는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사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2000. 3. 23, Financial Times

독일의 전력회사간 기업결합, 저지당할 위기에

독일 및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4월 14일, 두 건의 대형 기업결합에 대하여 관련기업들이 독일 및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경쟁상 우려를 해소시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독일 전력산업의 통합은 벽에 부딪쳤다.

두 당국은 두 건의 기업결합 계획-Viag사와 Veba사간의 기업결합 및 RWE사와 VEW사간의 기업결합-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의한 전력시장의 지배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각각 언급하였다. 이들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유럽 제3위 및 4위의 전력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월 개시된 Veba사와 Viag사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상세한 4개월간의 조사의 일환으로 두 기업에 송부한 "이의성명서"의 요약을 공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해 성명서에서 이 기업결합은 EU의 단일시장과 양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인 Ulf B ge는 RWE/VEW 기업결합은 "비경쟁적인 구조를 갖는 복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EU 경쟁담당위원인 Mario Monti는 Veba/Viag 기업결합은 "독일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의 조건을 중대하게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시장을 자유화함으로써 이미 달성된 성공을 위험에 빼드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전부 합쳐 독일 전력생산의 80% 이상이, 그리고 독일 전송망의 80% 이상이 이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들 그룹은 또한 100개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 및 지역 전력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

관리들은 관련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결합을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급진적인 조치 - 제3자에 대한 상당 지분의 매각 등 - 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기업들은 기업결합 인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 낙관적이라고 하였다. "RWE사와 VEW사는 몇주 내에 이러한 우려를 일소하여 당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RWE 사는 밝혔다.

Veba사와 Viag사는 EC와 이를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수락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관련기업들은 밝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RWE사와 VEW사에 대해 4월 28일까지 우려사항 해소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Veba사와 Viag사에 1개월의 기간을 허여하였다. 두 기업결합 모두 6월 19일에 최종결정을 받게 된다.

유럽위원회가 Veba/Viag 기업결합을 다룬 것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이 독일영역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이었다. 14일, 두 당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종 기한에 대해서도 조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우리가 독일 당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 유럽위원회의 관료는 밝혔다.

■ 2000. 4. 15, Financial Times

둘러싸고 도쿄 도내의 석유도매업자 10여개사가 담합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5일까지 각 사 사무소 등 10여개 소를 독점금지법(부당한 거래제한) 위반혐의로 현장조사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매업체 10여개사는 수산청이 도쿄 및 요코하마 등 전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 등에 사용할 디젤엔진용 경유와 중유의 일 반경쟁입찰에서 담합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여 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1999년도의 발주총액은 약 9억엔이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있었던 4월 12일에도 담합의 혐의를 받은 10여개사를 포함 약 20개사가 도내의 임대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있었으며, 이 회합도 조사대상이 되었다.

■ 2000. 4. 15, 요미우리신문

뉴질랜드

일본

수산청 입찰에서 담합
의혹 - 공정위 현장조사

뉴질랜드 고등법원,
칼텍스, 모빌 및 쉘의
가격카르텔에 대하여
117.5만 달러의
벌금 부과

수산청 발주의 선박연료의 입찰을

지난 2월 5일 오클란트 고등법원은 칼텍스참뉴질랜드사, 모빌참뉴질랜드

사 및 쉘합뉴질랜드사에 대해 가격카르텔에 의해 상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합계 117.5만 달러의 벌금지불을 명하였다.

상업위원회의 존합벨크레우 위원장은 장시간의 심리를 거쳐 칼텍스와 모빌 및 쉘이 상업법상의 가격카르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벨크레우 위원장은 “주요한 석유회사 그룹이 가솔린에 관하여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세계에서도 처음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개의 석유회사에 대하여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주요한 회사인 그룹에 대하여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작년 10월, 법원은 위원회가 이 사건을 입증한 취지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 3사가 공모하여 오클란트의 50개 이상의 가솔린주유소에서 가솔린 가격의 할인을 공동으로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할인은 20달러 이상의 가솔린을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무료세차를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판결에서 살몬 판사는 이 할인은 “가솔린가격 설정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기능하였다는 것 및 가솔린에 관한 할인이었다” 라며, “당해 석유회사 개개의 대표자들은 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 부실한 진술을 행하였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소장을 1997년 7월에 제출하였다.

칼텍스 및 모빌은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에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반론

하는 소송을 제출하였지만 실패로 끝났으며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다.

재판은 작년 8월과 9월에 열렸고 살몬 판사는 10월에 판결을 내렸다.

양형심문절차는 2주전에 열렸고, 살몬 판사는 벌칙에 관한 판결을 금일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칼텍스에 대하여 45만 달러를, 모빌에 대하여 35만 달러를 그리고 쉘에 대하여 37만5천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하였다.

벨글레우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첫번째로 가격카르텔은 상업법의 주요한 위반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반경쟁적이며 또한 반소비자적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최우량의 가격을 쫓아 물건을 구입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석유회사는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과대하게 지불했다. 두번째로 사업자는 가격카르텔이 최종소매가격만이 아닌 가격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쟁자 간에 있어서 할인, 커미션, 인하 및 가격의 다른 모든 부분에 관한 정규 또는 비공식 협정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원회는 계속하여 가격카르텔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2000. 2. 5. NZ상업위원회 발표